제2002-1747호

법인설립 허가증

1. 법인명칭 : (재)환경재단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6 백남빌딩, 703호

3. 대 표 자

○ 성　　명 : 최 열

○ 생년월일 : 1949년 01월 19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02-1802

4. 사업내용

○ 환경단체와 환경관련 연구기관 지원

○ 환경 연구 프로젝트 지원

○ 시민환경의식의 고양을 위한 환경행사 지원 및 교육, 문화사업

○ 제3세계 환경운동 지원을 위한 국제 학술 교류 및 지원

○ 친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5. 허가조건 :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허가조건

Ⅰ.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에 해당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Ⅰ. 민법,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Ⅰ. 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이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Ⅰ. 설립허가 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위 각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합니다.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확 인
2012.05.14	주된 사업 변경	
2016.03.28	주된 사무실 소재지 변경	
2017.11.03	대표자 변경	
2020.08.31	주된 사무실 소재지 변경	

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